|  |  |  |
| --- | --- | --- |
| **애니메이션산업 발전 지원 증치세, 영업세 정책에 대한 통지**  財稅 [2011] 119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산업의 건강하고 빠른 발전을 촉진시키고 애니메이션산업의 자주 혁신능력을 보강시키기 위해,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증치세, 영업세 정책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증치세 관련  증치세 일반납세자에 속하는 애니메이션기업이 그가 스스로 개발, 생산한 애니메이션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경우 17%의 세율에 따라 증치세를 징수한 후 그 증치세 실제 세부담이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 즉시 환급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애니메이션소프트웨어의 수출은 증치세를 면제한다. 상술한 애니메이션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제품 증치세 정책에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財稅 [2011] 100호) 중 소프트웨어제품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 영업세 관련  애니메이션기업이 애니메이션제품 개발에 제공한 애니메이션 각본편찬, 형상설계, 배경설계, 애니메이션 설계, 미러, 애니메이션 제작, 촬영, 획선, 착색, 화면합성, 더빙, 배음, 음향효과 합성, 편집, 자막제작, 압축코드(인터넷 애니메이션, 휴대폰 애니메이션을 상대하는 격식어댑터) 용역, 그리고 애니메이션 기업이 경내에서 애니메이션 판권을 양도하는 교역수입(애니메이션 브랜드, 이미지 또는 콘텐츠의 수권 및 재수권 포함)은 3%의 절감세율로 영업세를 징수한다.  애니메이션 기업과 스스로 개발, 생산한 애니메이션 제품의 인증표준과 인증절차는 《<애니메이션기업 인정 관리방법(시범)> 인쇄 발부에 대한 문화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文市發 [2008] 51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3. 이 통지 집행시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이다. 《애니메이션산업 발전 지원 조세정책 문제에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財稅 [2009] 65호) 제1조, 제3조의 규정은 이에 따라 폐지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1년 12월 27일 |  | **关于扶持动漫产业发展增值税、营业税政策的通知**  财税[2011]119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  　　为促进我国动漫产业健康快速发展，增强动漫产业的自主创新能力，现就扶持动漫产业发展的增值税、营业税政策通知如下：  　　一、关于增值税  　　对属于增值税一般纳税人的动漫企业销售其自主开发生产的动漫软件，按17%的税率征收增值税后，对其增值税实际税负超过3%的部分，实行即征即退政策。动漫软件出口免征增值税。上述动漫软件，按照《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软件产品增值税政策的通知》（财税[2011]100号）中软件产品相关规定执行。  　　二、关于营业税  　　对动漫企业为开发动漫产品提供的动漫脚本编撰、形象设计、背景设计、动画设计、分镜、动画制作、摄制、描线、上色、画面合成、配音、配乐、音效合成、剪辑、字幕制作、压缩转码（面向网络动漫、手机动漫格式适配）劳务，以及动漫企业在境内转让动漫版权交易收入（包括动漫品牌、形象或内容的授权及再授权），减按3%税率征收营业税。  　　动漫企业和自主开发、生产动漫产品的认定标准和认定程序，按照《文化部 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印发<动漫企业认定管理办法（试行）>的通知》（文市发[2008]51号）的规定执行。  　　三、本通知执行时间自2011年1月1日至2012年12月31日。《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扶持动漫产业发展有关税收政策问题的通知》（财税[2009]65号）第一条、第三条规定相应废止。    　　　　　　　　　　　　　 　财政部  国家税务总局  　　　　　二〇一一年十二月二十七日 |